

『茶山學』 편집 규정

1. 목적

이 규정은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연구기관지인 『茶山學』의 간행을 위한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게재내용

- 1) 『茶山學』은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과 본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논문·자료·서평(연구논평) 등의 투고投稿를 중심으로 편집한다.
- 2) 반드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발간회수

『茶山學』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2회 간행하며, 편집위원회 결정에 의해 따로 특집을 발간할 수 있다. 특집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4.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

- 1) 편집위원은 본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며, 현재 활동 중인 다산학과 실학 및 국학분야의 중진학자 12인 이하로 구성한다.
- 2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선임한다.

- 3)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4)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집간사 및 편집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5. 편집위원회의 업무

- 1)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연구지원 논문의 기획과 집필의뢰
- 2) 투고된 원고에 대한 1차 심사위원의 선정 및 평가
- 3) 1차 심사된 원고에 대한 2차 심사
- 4) 『茶山學』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의 의결

6. 논문심사

- 1) 편집위원회는 투고·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며,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. 학술대회발표논문은 논평자의 논평을 1인의 심사위원의 평가로 간주한다.
- 2) 심사위원은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3)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의 논문을 주제의 창의성(30점), 논리 및 체계성(30점), 완성도(20점), 시의성時直性(20점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.
- 4) 심사의뢰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하되, 심사등급은 A(적극추천으로 수정 없이 게재), B(일부수정 후 게재), C(수정 후 재응모), D(게재불가)로 나눈다.
- 5) 종합적으로 B 이하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이를 규정된 양식을 통하여 통보하고,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.
- 6) 일부수정후 게재의 경우는 집필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간사가 확인하

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, 수정후 재응모의 경우는 1차 심사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, 재심사 후 다시 수정후 재응모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

7)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 및 수정 후 2차 심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- 평가자 2명 이상 적극추천: 게재
- 평가자 1명 적극추천, 2명 일부수정: 수정후 게재
- 평가자 3명 모두 일부수정: 수정후 게재
- 평가자 1명 일부수정, 1명 대폭수정 또는 게재불가, 1명 적극 추천: 수정후 재응모
- 평가자 2명 일부수정, 1명 대폭수정 또는 게재불가: 수정후 재응모
- 평가자 2명 대폭수정, 1명 적극추천 또는 일부수정: 수정후 재응모
- 평가자 2명 대폭수정, 1명 게재불가: 게재불가
- 평가자 2명이상 게재불가: 게재불가

* 위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7. 『茶山學』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금하며(해외 학술지에 번역게재 제외) 판권은 일정기간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소유한다.

8. 투고규정 및 원고집필의 형식은 별도로 정하여 『茶山學』 매호에 게재하며, 본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9.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본 재단의 관례에 따른다.

10.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